

 루리 위키 >  가이드 · 고민 해결

홈 > 고민 해결

루리의 줍줍 · 응모·실무 가이드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반환 기준: 자퇴·휴학...

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반환 기준: 자퇴·휴학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루리

대학 등록금 반환은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와 각 대학 학칙으로 정해져요. 학기 개시일에서 며칠이 지났는지에 따라 반환 비율이 달라지고, 개시일 90일이 지나면 반환되지 않아요.

대학 등록금 반환은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와 각 대학 학칙으로 정해져요. 학기 개시일에서 며칠이 지났는지에 따라 반환 비율이 달라지고, 개시일 90일이 지나면 반환되지 않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조문과 교육부 법령해석 게시글을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실제 금액은 학교 학칙과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 1.기본 정보

항목	내용
근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4조~제6조
징수 방법	학칙에 따라 학점별·학기별·월별로 징수(제4조)
입학금	입학 시 전액 징수(제4조 제4항)
납부 연기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기일을 2개월 연장 가능(제5조 제4항)
과오납	전액 반환(제6조 제1항)
분할 납부	학교별 학칙·공지로 정해요. 횟수와 시기는 공식 확인

2 2.반환 사유 (제6조 제2항)

- 법령에 따라 입학하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을 포기한 경우
- 재학생이 자퇴 의사를 밝힌 경우
- 휴학생이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
-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한 경우(학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월할 수 있어요)

3 3.시점별 반환 비율

교육부 법령해석 게시글에 실린 별표 기준이에요.

반환 사유가 생긴 시점	반환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30일 초과 ~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60일 초과 ~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학기 개시일 전에 휴학하려는 사람에게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아요(제4조 제5항). 학기 개시 전 반환 범위와 입학금 처리는 학칙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4 4.처리 순서

- 소속 대학 학칙에서 분할 납부·반환 조항을 찾아요.
- 자퇴·휴학 신청서를 학교가 정한 방법으로 내요.
- 반환 사유 발생일(신청일 기준 등)을 학교에 확인해요.
- 학기 개시일부터 며칠째인지 계산해 비율을 곱해요.
- 환불 계좌를 알려 주고 입금 시기를 확인해요.

5 5.가상 예시

A씨가 등록금 400만 원을 내고 학기 개시 20일째에 자퇴 의사를 밝혔다고 가정해요(가상 예시). 30일 이내이므로 6분의 5 기준이면 약 333만 원이에요. 실제로는 대학이 이 별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6 6.자주 하는 실수

- 신청서를 낸 날과 반환 사유 발생일이 다를 수 있는데 확인하지 않아요.
- 분할 납부 중이면 낸 금액만 돌려받는다고 생각해요. 계산 방식은 학칙에 따라 달라요.
- 장학금·학자금대출이 섞인 경우 환수·상환 절차를 따로 확인하지 않아요.

7 체크리스트

- 학칙의 반환 조항을 확인했다
- 학기 개시일과 사유 발생일을 확인했다
- 경과 일수 구간을 계산했다

- 장학금·대출 연동 여부를 학교에 물었다
- 환불 계좌를 제출했다

8 용어 정리

- **과오납**: 잘못 더 낸 등록금이에요. 전액 반환돼요.
- **이월**: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한 경우 낸 돈을 다음 학기로 넘기는 방식이에요.
- **납부 연기**: 정해진 기일보다 늦게 내도록 학교장이 허용하는 것이에요.
- **개시일**: 해당 학기가 시작하는 날이에요.

9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40223&joNo=000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40223&joNo=000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같은 규칙 제5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40223&joNo=0005&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40223&joNo=0005&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같은 규칙 제6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40223&joNo=0006&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40223&joNo=0006&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교육부 법령해석(신입생 등록 취소 반환): <https://www.law.go.kr/LSW/cgmExpclInfoP.do?cgmExpclDatSeq=412048&mode=2&oficlsCd=350109> (<https://www.law.go.kr/LSW/cgmExpclInfoP.do?cgmExpclDatSeq=412048&mode=2&oficlsCd=350109>)
- 현행 별표와 분할 납부 세부: 이 글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함(공식 확인)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링크 복사

네이버 블로그

밴드

X

Facebook

💬 다른 고민 보기 · 🌟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

10 마감 임박 공모전



출처: 루리의 줍줍(sungprofile.cloud) · 최신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